

주최 :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(KSIC)

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92(장충동2가) 문구회관
전화 : (02)2278-7891~5 팩스 : (02)2275-1065 / e-mail : sisofair@ksic.co.kr

제 1조 (용어의 정의)

1. "전시자"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를 말한다.
2. "전시회"라 함은 서울국제문구·사무용품종합 전시회 (SISOFAIR)를 말한다.
3. "주최자"라 함은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을 말한다.

제 2조 (참가신청)

1.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와 신청금을 납입함으로써 전시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.

제 3조 (부스배정)

1. 전시부스의 배정은 참가신청 및 납부, 부스규모 등에 의한다. 다만, 전시회 입장객의 참관편의 등을 위하여 주최자의 판단에 따라 특정업종의 참가부스를 특정구역에 집중 배치되도록 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.
2.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 및 스페이스를 변경할 수 있다. 이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 4조 (전시실관리)

1. 전시회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이나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, 주최자는 즉시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2.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3.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, 천정, 기둥, 벽면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, 전시자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5조 (납입조건)

1. 전시자는 참가비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가신청서 제출시 납입해야 하며, 잔금 50%는 2019년 8월31일 이전에 납입하여야 한다.
2. 참가비의 완납이 납입기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을 해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 신청비는 주최자의 소유로 한다.

제 6조 (해약)

1.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 전부의 사용을 포기 또는 거부하는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 7조 (전시회의 변경)

1. 주최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시회의 개최를 취소 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불가항력으로 인한 전시회 개최 취소시에는 기납입된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 8조 (전시품의 반·출입)

1. 전시자는 지정기간내에 모든 전시품을 반·출입하여야하며 지연시에는 이에 따른 비용을 주최측에 납입하여야 한다.

제 9조 (전시장 경비 및 위험부담)

1. 주최자는 전시자의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.
2. 전시자는 전시회 개최기간내에 전시자의 스탠드 및 전시품의 도난, 훼손에 대하여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.

제 10조 (방화규칙)

1. 스탠드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.
2.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모든 전시자에게 소방대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3. 화재시 발생원인업체에서 제반 손해배상 및 민·형사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.

제 11조 (보충 규정)

1.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2.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3. 전시자는 코엑스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12조 (분쟁해결)

1.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,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.
2. 전시자는 동업종전시자와 선의의 경쟁으로 상담에 임해야하며 덤핑 행위 등으로 타업체에 피해를 주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취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
제 13조 (규정의 해석)

본 규정의 해석과 전시회 참가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해석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.